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730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71	김승수의원	2024. 12. 31.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4.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679	김도읍의원	2025. 7. 23.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9.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10	정부	2025. 9. 18.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 11. 19.)에서 위 3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11. 30.)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제15호, 제18호, 제24호, 제25호, 제37호, 제82호, 제89호부터 제91호까지, 제106호, 제107호, 제153호, 제188호, 제190호, 제206호 및 제2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18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3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8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8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9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46조의8	기 사용허가등	
10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10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1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188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여	2029. 12. 31.
19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2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2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별표에 제220호부터 제2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0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2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22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21호 및 제22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 중 “국유·공유재산”을 각각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②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226호 국립공원공단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27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개정규정”을 “개정규정(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408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제21조”를 “제21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⑦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516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 “제105조의 개정규정”을 “제105조의 개정규정(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